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지청구제도 도입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5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26.
-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국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특허법」, 「상표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공정

거래 분야의 경우 202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 도입되어 2021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에 관한 것¹⁾으로, 배타성을 갖지 않는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²⁾ 따라서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은 금지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 사인의 금지청구권 관련 국내 제도 주요 현황 >

법명	근거조문	주체	행사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업상의 이익이 있는 자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1)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자 2019카합21241 결정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바로 그 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가 소유권과 같이 절대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거나 인격권 등과 같이 권리의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프로모션 진행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영업권으로서 이를 인격권이나 소유권과 같이 배타성을 가진 권리로 보기도 어려워,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표법	제107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경우 청구 가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 및 교사·방조 행위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 금지청구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소하여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 구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³⁾,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그 행위를 금지·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제재 등 사후적 조치와 그 성격을 달리함.⁴⁾

○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청구가 대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45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모든 위반행위를 사인의 금지청구 대상으로 규정함.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제3조), 선급금 지급(제6조), 하도급대금지급(제13조) 등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소극적 상태로서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금지 또는 예방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3) 이선희, 개정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경쟁저널, p.6~17

4) 공정거래법의 금지청구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도입·시행되었음.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청구에 관한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제도의 성과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

않아 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⁵⁾, 적극적 행위 의무 위반에 대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을 해소할 특정 행위를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여 원사업자에게 부과⁶⁾할 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지청구를 개정안과 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

(단위: 건)

구분	대금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 미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2021년	97	7	225	30	452
2022년	75	3	76	31	162
2023년	108	8	138	35	329

- 5) 공정거래법 및 개정안의 금지청구권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 행위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 작위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금지 또는 예방’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안별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이선희, 개정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경쟁저널 / 孫東煥,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법조)
-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등 유사입법례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구분	대금 지연지급	수령거부	부당감액	기타	합 계
2021년	21	11	2	148	993
2022년	6	8	8	77	446
2023년	10	13	7	138	786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통계연보(재구성)

문 의 처
02) 6788-5109